

광주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61594(본소), 2019나61600(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61594(본소), 2019나61600(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355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훈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훈모, 양이림, 백승찬

변론 종결2020. 4. 8.

판결 선고2020. 4. 29.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3551(본소),
2018가단80275(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277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32m²(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873,843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2. 25.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7행 아래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D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다.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건물이 존립할 수 없어서 식당 전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불명확하거나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 면적이 상당한 점, 더욱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 계획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현호

판사황영희

판사정혜원

별지